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10.08)

## 다올글로벌멀티에셋인컴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CV989)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다올글로벌멀티에셋인컴EMP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다올글로벌멀티에셋인컴EMP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라 한다)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외국통화표시(미국달러 등)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 ETF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해지 전략은 모투자신탁에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글로벌멀티에셋인컴EMP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p><b>&lt;투자대상&gt;</b> <u>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u></p> <p><b>&lt;주요 투자전략&gt;</b>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국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라 한다)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p> <p>※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함</p> <p>[기본 운용전략]</p>

- 미국 주식 중심의 스타일 ETF를 활용한 체계적인 초과 수익 추구
- 글로벌 국채, 크레딧, 주식형 인컴 ETF 등에 투자하여 인컴수익 추구
- 자산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변동성 제어를 통해 위험 대비 수익률 향상 추구

#### [상세 운용전략]

##### ① 성장형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모멘텀 혹은 성장주 스타일과 가치주 스타일 등의 글로벌 주식형 ETF 조합을 통해 위험조정 수익률 향상
- 모멘텀 혹은 성장주와 가치주 등 스타일간 전략적 배분 비중 결정 시 시가총액 규모,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
- ✓ 매크로 환경 변화 발생시 일정 범위 내 자산배분을 통한 초과수익 기회 추구
- ✓ 기회적 알파 추구 전략 – 시장기회에 따른 중단기 투자전략 구성
- 미국섹터, 기타 스타일 및 주식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 추구
- 전술적 기회에 따라 북미/유로존/아시아태평양/이머징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 조정

##### ② 인컴형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 선진국 국채 및 투자등급 등의 안정형 ETF 투자를 통한 인컴 수익 추구
- ✓ 선진국 하이일드, 이머징 채권, 고배당주, 리츠(REITs) 등의 적극형 ETF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추구
- ✓ 인컴형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고려하여 인컴 수익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차익 추구 지양

##### ③ 리스크 제어 전략

- ✓ 적극적인 변동성 관리를 통한 위험조정수익률 향상
- 시장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제어 프로세스 실행
-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자산 배분 효과 극대화 및 펀드의 변동성 제어 추구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해당사항 없음

####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채권관련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해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주식관련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환해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글로벌 ETF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채권 관련 글로벌 ETF 투자로 인한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해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주식 관련 글로벌 ETF 투자로 인한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서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별도의 환해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3) 채권 관련 글로벌 ETF 투자에 따른 환위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90~100% 수준으로 환해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해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4) 주식 및 채권 관련 글로벌 ETF 등에 대한 투자 분의 환해지는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윤용역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채권관련 글로벌 ETF 등에 대한 투자분의 환해지 비율은 90~100%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5) 환해지와 관련하여 환해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 투자를 통해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글로벌 ETF 등에 주로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 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4.08.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성준석	1980년	책임 (본부장)	12개	2,444억	11.47	5.29	10.31	4.30	7년 3개월	
	박수범	1985년	책임 (팀장)	8개	1,910억	11.48	5.29	10.31	4.30	10년 5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 투자를 통해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위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투자하는 글로벌 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위험	투자신탁의 순자산변동에 따라 계획한 투자대상자산 투자 비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 설정 규모가 작아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불가한 경우에도 계획한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지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정기적 리밸런싱과 시장상황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할 계획입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글로벌 ETF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통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u>투자신탁재산의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u> 위해 채권 관련 글로벌 ETF 투자로 인한 <u>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주식 관련 글로벌 ETF 투자로 인한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서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u> <u>채권 관련 글로벌 ETF 투자에 따른 환위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9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u> 그러나, 환헤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u>주식 및 채권 관련 글로벌 ETF 등에 대한 투자 분의 환헤지는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채권관련 글로벌 ETF 등에 대한 투자분의 환헤지 비율은 90~100%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u>

		<p>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p>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므로 투자자는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판매 방법	• 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 <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daolfund.com">www.daolfund.com</a>)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www.daolfund.com">www.daolfund.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www.daolfund.com">www.daolfund.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p>-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 퇴직연금제도의 세제</b>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b>※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b>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15일	준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 수수료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디플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http://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http://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http://www.daolfund.com))